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김지연

전화 031-475-4290 / 팩스 031-481-4555

보도자료

2021. 4. 12.(월)

제목

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기한 국가연구기관 센터장 등 연구원의 공직부패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이곤형)는 직무수행 중 개발한 기술을 코스피 상장회사에 이전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해 거액의 사적이익을 취득한 국가연구기관의 센터장 등 2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금일 불구속 기소함

※ 보도자료 배포일 주가 29.77% 상승, 그 다음날 최대 17.37% 상승함

● 안산지청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, 사적 이익을 취득한 공직부패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대응할 예정

I 피고인들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들

- A(47세, ○○연구원 前 센터장, 現 책임연구원), 불구속 기소
- B(43세, ○○연구원 책임연구원), 불구속 기소

※ ○○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임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A, B는 2017. 9.경 ○○연구원에서 직무수행 중 개발한 특허 및 노하우 기술을 코스피 상장사 C사에 이전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C사의 주식을 A는 8,498만 원 상당, B는 1억 4,747만 원 상당에 각 매수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, A는 3억 1,935만 원(시세차익 : 2억 3,437만 원), B는 6억 3,503만 원(시세차익 : 4억 8,756만 원)에 각 매도하여 [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및 자본시장법위반]

II

수사 경과

- '20. 10. 경찰, A, B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불구속송치
- '20. 11.~ 검찰, 피고인들 조사, 기술검토 등 보완수사
- '21. 3. 검찰, A, B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/ 법원, 기각
※ 기각사유 : 증거인멸 우려 없고, 주거 일정하여 도주우려 없음
- '21. 3. 검찰, 참고인들 및 피고인들 조사 등 보완수사
※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(업무상 비밀이용 금지) 관련 인지
- '21. 4. 검찰, A, B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/ 법원, 기각
※ 기각사유 : 증거인멸 우려 없고, 도주우려 없음
- '21. 4. 12. 검찰, A, B에 대한 불구속 기소(추징보전명령 청구)

III

참고 사항

- 이 사건은 국가연구기관의 공직자인 피고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상장법인에 기술이전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대상 법인의 주식을 매매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부패 사건임
-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를 추가 인지하고, 동법상 추징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취득한 법인 주식의 시세차액이 아닌 매도금액 전체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하여 불법수익이 환수되도록 조치하였음
- 안산지청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엄벌 및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☑